

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3년 11월 10일(충청북도교육감)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11월 13일
- 다. 상정일자 : 2003년 12월 2일(제2차교육사회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육감이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후 일정 기간동안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여
- 초등교사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에 있음

나. 주요골자

- 교육감은 청주교대총장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협약을 매년 체결
- 총장이 추천하는 장학생에게 입학금, 수업료, 기타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
- 졸업후에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도내 공립초등학교에 3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내용임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임석규)

-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립초등학교 교원수급의 안정적인 확보와 그 가시적 성과를 얻기를 위한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
- 그러나 동 조례안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 - 첫 째, 초등교사의 안정적인 확보에만 치중하는 이유
 - 둘째, 청주교대 총장이 추천하는 장학생의 세부기준은
 - 셋 째, 청주교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장학제도와 중복되어 예산의 낭비여부
 - 넷 째, 도내 타 대학에 재학중인 교육학 전공자와의 형평성과 특혜성 여부
 - 다섯째, 장학금이 입학금, 수업료, 기타 공납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
 - 여섯째, 장기요양의 경우 그 기간의 범위와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
 - 일곱째, 3년 의무복무, 장학금 반납 등 의무 불이행시 재정보증 확보 및 강제징수 가능 여부
 - 여덟째, 의무 복무기간을 제한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와 그 위법성의 여부
 - 아홉째, 초등교사의 수급계획(시행 5년전 ~ 향후 10년간)
 - 열번째, 투자되는 소요재원 대비 동 조례의 목적 달성여부 등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가. 수정이유

- 청주교육대학교 장학생 지급대상 인원과 초등교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각각 축소 및 연장하고, 장학금 지급기간에 대한 한시적 규정을 두어
-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부담 해소와 아울러 도내 일반대학생과의 장학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여 동 조례를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청주교육대학교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을 동 조례에 명시하고 그 규모를 축소(제3조)
 - 100명 → 50명
- 초등교사의 의무적 복무기간을 1년 연장(제7조)
 - 3년 → 4년
- 장학금 지급기간을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 삽입 함.(부칙 제2항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안

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

제3조(장학생의 수) 장학생의 수는 학년당 50명이내에서 매년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수급전망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.

제7조(복무의무) ①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는 공립 초등학교에서 4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②(적용례)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지급은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 단, 지급기간은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

청주교육대학교장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3. 12. 2

발 의 자 : 김문천의원

1. 수정이유

- 청주교육대학교 장학생 지급대상 인원과 초등교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각각 축소 및 연장하고, 장학금 지급기간에 대한 한시적 규정을 두어
-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부담을 두어 해소와 아울러 도내 일반대학생과의 장학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여 동 조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청주교육대학교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을 동 조례에 명시하고 그 규모를 축소(제3조)
 - 100명 → 50명
- 초등교사의 의무적 복무기간을 연장(제7조)
 - 3년 → 4년
- 장학금 지급기간을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때까지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 삽입 함.(부칙 제2항)

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3조 중

- “장학생의 수는” 를
- “장학생의 수는 학년당 50명이내에서” 로 한다.

○ 안 제7조 중

- “3년이상” 을 “4년이상” 으로한다

○ 부칙 제2항 중

- “이 조례는 청주교대에 입학하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” 를
- “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지급은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 단, 지급기간은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장학생 수) 장학생의 수는 매 년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수급전망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	제3조(장학생수) 장학생의 수는 <u>학년당</u> <u>50명 이내에서</u> 매년 공립초등학교 교사 의 수급전망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 육감이 정한다
제7조(복무의무) ①장학금을 지급 받 은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는 공립 초등학교에서 <u>3년이상</u> 근무하여야 한 다.	제7조(복무의무) ①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는 공립초등학 교에서 <u>4년이상</u> 근무하여야 한다.
부 칙	부 칙
②(적용례)이 조례는 <u>청주교대에 입</u> <u>학하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</u> <u>한다.</u>	②(적용례)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지급 은 <u>청주교육대학교 입학하는 2004학년</u> <u>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 단, 지급기간</u> <u>은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</u> <u>로 한다.</u>